

양주시의회 공고 제 2020 - 28 호

「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8일

양 주 시 의 회 의장



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효행교육 장려 및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기타 조례 용어 정비 등(안 제1조, 제10조 등)
- 나. 효행교육 장려 및 지원 대상(안 제5조 신설)

3. 자치법규안: 별첨

4. 의견제출

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제출기한: 2020년 11월 4일 (수)까지
- 나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양주시 홈페이지 등
- 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 등
- 라. 제출기관: 양주시의회(의회사무과)
 - 주 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(남방동)
 - 전 화: 031-8082-7063

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생년월일:
- 주 소:
- 연락처: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